

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약정서 개정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		
<p>본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약정서(이하 "약정서"라 한다.)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[] 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간에 년 월 일에 체결한 []의 부속서류로서 담보약정서이며,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</p> <p>제1조 - 제2조 <생 략></p> <p>제3조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 ① - ③ 생략</p> <p>제4조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 ① 은행과 고객은 고객의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를 원(또는 미화)불으로 약정합니다.</p> <p>② - ⑤ 생략</p> <p>제5조 - 제9조 <생 략></p>	<p>본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약정서(이하 "약정서"라 한다)는 []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과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간에 년 월 일에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(이하 "기본계약서"라 한다)의 부속서류로서 담보약정서이며,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</p> <p>제1조 - 제2조 <좌동></p> <p>제3조 용어의 정의 ① - ③ 좌동</p> <p>제4조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 ① 은행과 고객은 고객의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를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(통화 및 금액)</td> </tr> </table> <p>② - ⑤ 좌동</p> <p>제5조 - 제9조 <좌 동></p>	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	(통화 및 금액)	<p>-고객명 기재란을 은행명보다 선두로 배치</p> <p>-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약정서의 기준계약서인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에 대한 명시</p> <p>제4조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조항 제목 변경</p> <p>손실한도 약정금액 기재 문구 명확화</p>
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	(통화 및 금액)			

<p>제10조 준거법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 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 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고객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(이하생략)</p> <p>제11조 <생략></p>	<p>제10조 준거법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본 약정서 또는 개별 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 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고객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(이하생략)</p> <p>제11조 <좌동></p>	<p>'약정서'로 단어 통일</p>
--	--	---------------------